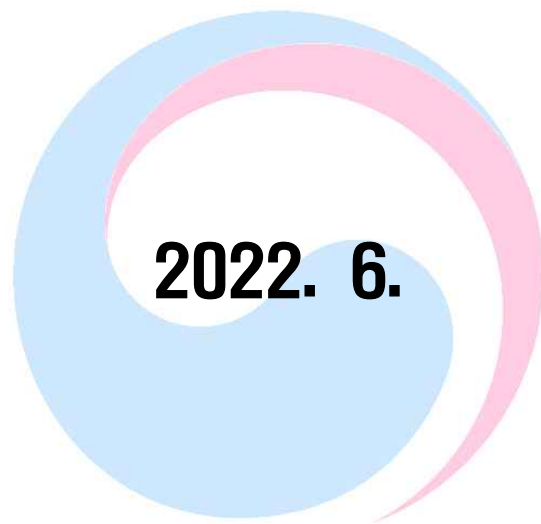

**특허·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



**특 허 청
특 허 제 도 과**

I

개정 배경

-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기술을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획득 지원방안 필요

* 尹, "반도체,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경제 근간(전체 수출액의 20%)" (헤럴드경제, '22.6.)

* 정부, AI반도체 R&D에 5년간 1조 투입... 전문인력 7000명 키운다 (서울경제, '22.6.)

-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16~'20) >

구 분	'16	'17	'18	'19	'20	합계
특허출원(건)	8,410	8,845	9,378	9,810	7,673**	44,116
특허등록(건)	5,518	5,548	6,117	7,159	8,050	32,392

* (산정기준) 국제특허분류(IPC) H01L

** '20년 특허출원은 미공개구간(특허출원 후 18개월까지 미공개)에 포함

- 급격한 기술변화와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화가 절실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 방향으로 전환중

-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의 확대가 시급

II

개정 사항

-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추진

- 우선심사 대상(시행령)에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추가
 - '첨단기술'의 구체적인 기준은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지정·공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안) >

현행	개정안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 12. (생략) <u>< 신설 ></u>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u>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u>

※ 실용신안법 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제5조제14호)

○ 관련 고시* 개정 및 지정공고를 통해 우선심사 대상을 구체화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

◆ [예시] **반도체 기술 관련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공고(안)**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 ①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부여될 것
- ② [기업]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연구소]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대학]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첨단반도체특성화대학의 출원 등

□ 개정 효과

- 글로벌 기술변화 등에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해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 지원 가능

Ⅲ 추진 일정



붙임 1 우선심사 관련 현행 규정(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 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p> <p>1. ~ 12. (생략)</p> <p><u><신 설></u></p>	<p>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 -----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u>1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u></p>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p> <p>1. ~ 13. (생략)</p> <p><u><신설></u></p>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 ----- -----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u>14.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u></p>